

『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출산 장려 및 가정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고, 공무원이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등 시정발전에 기여하거나 장기간 격무에 임한 경우 적절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여 사기를 진작하고 생산성을 높이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과 중복 및 상충되는 조항 정리
 - 제8조(출장공무원), 제17조(휴가의 종류), 제18조(연가일수), 제22조(공가), 제23조(특별휴가) 제2항 및 제4항 삭제
- 경조사휴가 부여일수 개정(안 제23조제1항, 별표 3)
 -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·외조부모 사망 : 2일 → 3일
 -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: 2일 → 5일
- 장기재직휴가 부여 및 사용기준 개정(안 제23조제7항)
 -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자 : 장기재직휴가 5일 신설
 -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자 : 10일 → 15일
 - 20년 이상 재직자 : 20일 → 30일
 - 전체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하여 5일 미만 잔여일 사용 가능

- 모성보호휴가 신설(안 제23조제9항)
 - 임신 초기(16주 이내) 여성공무원 : 5일
- 보육휴가 신설(안 제23조제10항)
 - 영유아(2세 미만)를 보육하는 공무원이 본인의 연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 : 연간 5일(부부공무원의 경우 합산)
- 포상휴가 신설(안 제23조제11항)
 - 공무원이 재해·재난, 축제 및 선거 등으로 장기간 격무에 종사하거나 주요 시책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: 5일 이내
-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공무원법」,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
-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5. 검토의견

-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
 - 상위법령인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복되는 조항을 정비하고, 일·가정 양립의 가족친화적 근무환경 조성과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경조사휴가·장기재직휴가 부여일수를 늘리고, 모성보호휴가·보육휴가·포상휴가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,
 -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입법목적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